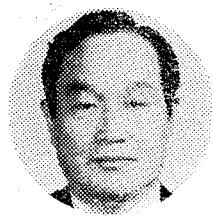


泰國의 商標制度解^二



朴 晚 緒
<辨理士>

① 登錄을 받을수 있는 商標

泰國商標法에서 「標章」이란 圖案(devise), 標印(brand), 題字(heading), 貼札(label), 引札(ticket), 名稱, 署名, 文字, 數字 또는 이들의 結合을 말한다.

한편 「商標」란 商品이 特定人의 生產 또는 販賣에 관계되는 것을 表示하기 위하여 商品에 또는 商品에 關聯하여 使用하거나 사용하려는 標章을 말한다.

이와같은 商標는 적어도 다음에 揭記하는 要件의 하나라도 갖추어야 한다.

- (1) 特殊한 樣態로 表示한 會社, 個人 또는 商社의 名稱
- (2) 商標登錄出願人 또는 그 運營에 대한 前權利者の 署名
- (3) 創作된 말
- (4) 商品의 品質 또는 品位와 直接 關係가 없는 말
• 普通意味의 地名
- (5) 其他 特別顯著한 標章

② 登錄使用될수 없는 商標

다음에 揭記한 것은 商標 또는 그 一部로서 使用할 수가 없다.

- (1) 王室 또는 官의 紋章이나 徽章, 王旗 및 國旗
- (2) 王의 이름 및 그 組合된 文字
- (3) 王, 王妃, 王子, 王女의 肖像
- (4) 赤十字의 記章 및 稱號
- (5) 公共秩序와 道德에 反하는 標章
- (6) 公共博覽會에서 受賞한 賞牌圖形 등

③ 登錄出願

泰國에서의 登錄出願은 商務部會(Ministerial Regulation)에서 定한 節次에 따르고 登錄하려는 商標와 同一한 見本을添付하여야 한다.

商標의 登錄出願은 商標法에 附屬된 類別에 따라 1 類別의 全部나 또는 特定한 商品에 다 할수가 있다.

그러나 出願人이 商標所有者가 아닐 때는 등록출원을 할 權限이 있다는 것을 證明하는 委任狀을 願書에添付해야 하는데 商標所有者 또는 代理人이 泰國에 营業所 또는 文書送達所를 갖고있지 않을 때는 登錄出願을 할 수가 없다.

또한 同一한 商標를 다른 類別의 商品에 다 사용하려면 各類別의 상품에 따로 出願해야하고 同種類의 상품에 關하여 出願人以外의 第3者가 사용할 때는 상품의 誤認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있는 둘以上의 國히 類似한 商標를同一人에게 屬해있는 限 聯合商標로서 登錄할 수가 있다.

商標가 泰國文字以外의 文字로서 表現된 글을 包含할 때는 그 各語의 音譯 또는 가능한 限 翻譯을 願書에 裏書하되 그 裏書에는 商標所有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이 필요하다.

이러한 節次에 따라 出願되면 登錄官은 商標가 不登錄事項을 포함하고 있거나 同一類別商品에 이미 他人에 의해 登錄된 상표와 同一하여 또는 公衆을 欺瞞할 憂慮가 있을만큼 類似한 등 商標法에서의 所定要件을 具備하지 않았다고 認定할 때는 登錄을 拒絕하여 그 出願이 受理될 수 없다는 理由를 나타낸 通知書를 出願人에게 送付한다.

이에따라 出願拒絶理由書를 受領한 날로부터 90日以内에 出願人은 抗告廳에 登錄官을 통해 抗告를 提起할 수가 있다.

만약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을 目적으로 하는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에 關하여 各各別個의 登錄出願이 있

을 때에 登錄官은 이를 出願人 모두에게 通知하여 當事者間に 事件을 解決토록 하던가 또는 法院에 事件을 提起토록 하게되는데 이 통지를 받은 3個月以内에 當事者間に 協議가 成立되었거나 또는 法院에 提起되지 않은 狀態에 있으면 最初에 출원한 商標에 登錄節次를 밟도록 한다. 그러나 當初부터 登錄을 받을수 있는 商標로서 不登錄事由에 該當되지 않고 異議申請도 없을 때는 所定의 節次를 밟아 登錄하게 된다.

④ 登 錄

商標登錄出願이 受理될 수 있다고 認定하면 登錄官은 部令이 定한 節次에 따라 出願을 公告하며 公告한 날로부터 90日內에 누구던지 登錄에 關하여 異議를 登錄者에게 提起할 수가 있다.

이때의 등록관은 遷滯 없이 出願人에게 異議申請書의 寫本을 送付하고 출원인은 그 날로부터 90日內에 自己出願의 正當性을 나타낸 答辯書를 등록관에게 提出하여야 하는데 이 節次를 懈怠하면 출원인은 그 출원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한다.

出願人에 의해 答辯書가 提出되면 등록관은 그 寫本을 다시 異議申請人에게 送付하는 절차를 밟고 登錄與否의 決定前에 當事者の 陳述을 듣기도 한다.

登錄官의 決定書를 受領한 當事자는 90日以内에 抗告廳의 決定에 關한 抗告를 할수 있고 訴를 提起한 要旨를 登錄官에 通知해 주어야 한다.

上記의 期日內에 등록관의 決定에 關한 抗告提起가 없으면 그 抗告權利마저 消滅하게 된다.

商標登錄出願이 受理되고 異議申請이 없었거나 異議가 成立되지 않았을 때에는 등록관은 部令이 定하는 節次에 따라 그 상표를 등록해 주고 이 날짜가 法定商標登錄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등록관은 出願人에 대하여 登錄證을 交付하게 되는데 만약 출원인의 懈怠으로서 6個月以内에 登錄을 完了하지 않으면 1次通知를 해주고 여기서도 期間內에 履行치 않으면 登錄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한다.

商標의 所有者로서 登錄한 者는 許可된 類別의 모든 商品에 商標을 사용할 專用權을 갖게된다.

⑤ 登 錄 更新 및 取消, 移轉

商標의 登錄은 10年間 有効하니 更新할 수가 있는데 商標權者는 存續期間滿了前 3個月以内에 部令이 定하는 樣式에 따라 原登錄 또는 更新登錄滿了日로부터 다시 10年間의 登錄更新을 申請할 수가 있다.

登錄官은 商標登錄의 存續期間滿了 3個月 以前에 商標權者에 關하여 登錄한 住所에 滿了에 關한 通知를 하게되며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 更新出願을 하지 않으면 그 상표를 登錄原簿에서 抹消시킨다.

그러나 商標登錄이 抹消된 경우일지라도 그 商標는 상표등록출원의 관계에서 抹消後 12個月間은 登錄商標로 看做하고 있는데 다만 抹消된 商標가 그 抹消直前の 2年間 善意로 使用하지 않았다고 認定할 때는 등록상표로 보지 않는다.

商標의 登錄에서 商標權者 또는 그 代理人이 泰國에서 營業所 또는 文書受取所를 廢止했을 때는 登錄原簿에서 抹消하게 되는데 이 抹消節次를 밟기기에 앞서 3個月前에 그 要旨를 商標權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豫告를 한다.

그外에도 다음에 揭記한 事項을 證明하는 利害關係人の 申請에 따라 法院命令으로 商標登錄을 抹消할 수가 있다.

- (1) 商標의 所有者로서 登錄한 者보다 그 登錄에 關해 有力한 權利(a better title)를 갖고 있을 때
- (2) 그 商標가 去來上 慣用의 것이 되었을 때
- (3) 商標가 登錄받을 수 있는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등이다.

또한 利害關係人은 商標가 商標權者 또는 그 營業上の 前主에게서 商品에 善意로 사용할 意思가 없는데도 登錄되었거나 事實上 善意로 使用하지 않았고 또는 抹消의 申請直前 5年間 商品에다 善意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理由로 法院에 申請함으로써 登錄만을 목적으로 한 商品에 關한 登錄商標를 抹消할 수가 있다.

한편 商標權은 그 상표가 등록된 상품에 關한 營業과 함께만이 移轉이 되고 聯合商標는 分離하여 讓渡 또는 이전할 수가 없다.

商標權의 移轉이나 既登錄事項의 變更은 登錄된 경 우에만 法律上 効力이 있고 變更이나 移轉申請은 部令이 定한 樣式으로 해야한다.

⑥ 優先權 認定

泰國政府가 工業所有權保護에 關한 國際條約에 加盟하였을 때는 그 加盟國의 1國에 商標登錄出願을 한 者는 누구던지 그 條約에 規定되어 있는 優先權을 갖을 수가 있다고 商標法에 規定되어 있는 바 泰國은 아직 파리協約에 加入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効力은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지난 7月 8日字로 商標登錄出願에 關한 互惠主義認定을 해주게 되었다.